

의안번호	2216946
의 퇴 인	황정아의원
회 답 일	2026. 4. 17.
추 계 번호	26B097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정부는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 <u><신 설> 4. 청년 연구자에 대한 연구장려금 지원 및 연구환경 개선</u>	의무규정
2	안 제8조(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정부는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함 <u><신 설> 1. 연구 시설·장비의 구축 및 고도화 지원</u> <u><신 설> 2. 인공지능 기반의 정보 인프라의 구축 및 고도화 지원</u> <u><신 설> 3. 정규직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의 확충 및 지원</u> <u><신 설> 4. 그 밖에 대학의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의무규정
3	안 제8조의2(국가기초과학연구소의 지정 등) 신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지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우수한 연구 역량을 갖춘 연구소를 국가기초과학연구소(이하 “국가기초과학연구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정부는 국가기초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4	안 제13조의3(기초연구 관련 현황의 조사·분석)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분야의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1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음(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7조(기초연구진흥정책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8조(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3	안 제8조의2(국가기초과학연구소의 지정 등) 신설	
4	안 제13조의3(기초연구 관련 현황의 조사·분석) 신설	
5	안 제1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신설	

2. 상세 사유

-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현행 사업들이 실시 중으로, 개정안에 따라 사업 규모 등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표 2] 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		
안 제7조(기초연구 진흥정책 등)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26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목적) 기초연구 및 미래 국가전략 분야에 부응하는 창의적 우수 인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이공계 우수한 학부, 석·박사 인재들을 대상으로 학비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 - (주요 내용)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석사우수장학금, 박사우수장학금 등 지원	69,786
	이공계 연구생활 장려금	- (목적) 대학 기관 중심 학생인건비 지급·운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학생인건비 기본 지급액 보장 및 지급 수준 상승 유도 - (주요 내용) 54개 대학 내 연구활동 중인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매달 안정적으로 일정 금액(석사 80만원/박사 110만원) 이상의 학생인건비 지급	83,04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		
안 제8조(대학의 기초연구환경 조성)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26
	개인기초연구	- (목적) 학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인단위 연구지원을 통해 창의적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연구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도록 산·학·연 소속 이공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원 - (주요 내용) 글로벌 리더연구, 핵심연구, 신진연구, 세종과학 펠로우십 등 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	2,265,651
	집단연구지원	- (목적) 국내 대학의 우수 연구인력을 학문분야별 특성에 맞게 조직화,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수준의 연구집단으로 성장 견인 - (주요 내용)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창의성과 탁월성을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집단 발굴·육성 ·(글로벌 기초연구실) 융·복합 연구의 활성화에 기틀이 되는 소규모 연구그룹 집중 육성 ·(국가연구소(NRL2.0)) 글로벌 최고 수준의 대학 연구소 육성을 위해 블록 편당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산학연 협력,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활용, 자립화 등 패키지로 지원	470,581
	기초연구기반구축	- (목적) 기초연구자들의 R&D 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첨단 대형연구시설 활용, 연구정보 지원을 포함한 AI·디지털 대학 연구기반 조성 등을 통해 기초연구 역량 강화 - (주요 내용)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협력) CERN의 대형 입자가속기(LHC)를 이용한 검출기실험 및 이론물리공동연구 참가 ·(기초연구실험데이터글로벌허브구축) 해외첨단연구시설(CERN(유럽), KEK(일본), LIGO(미국) 등) 및 국내 거대연구장비의 대용량 실험데이터 공유·분석 서비스를 통해 국내 기초연구환경 선진화 및 글로벌화 ·(해외대형연구시설활용연구지원) 국제교류를 통해 해외 첨단 대형연구시설 및 선진 실험기법에 대한 국내연구자들의 접근성 제고 ·(AI·디지털 기반 대학 연구혁신 및 인재양성) 기초연구 인프라의 첨단화 및 디지털화에 따른 온라인 가상실험실 구축 및 기초과학·AI 융합 인재 양성 ·(기초연구지원 정책 및 네트워크 구축)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현장 중심 기초연구 정책 수립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76,06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26
안 제8조의2(국가기초과학연구소의 지정 등) 신설	집단연구지원 (국가연구소 (NRL2.0))	- (목적) 대학 강점 분야의 우수 연구 인력, 인프라 등을 활용해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연구소 육성 - (주요 내용) 글로벌 최고 수준의 대학 연구소 육성을 위해 블록 편당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산학연 협력,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활용, 자립화 등 패키지로 지원	30,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안 제13조의3(기초연구 관련 현황의 조사·분석)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연구혁신개발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기초연구 분야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 중에 있음 - 이를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은 매년 ‘기초연구사업 통계연보’ 및 ‘기초연구사업 투자성과분석 보고서’를 발간(약 1천만원 소요)		
안 제1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구 관련 사업들을 한국연구재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대형 연구인프라 조성 관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정책 지원 관련) 등이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 및 운영비 출연, 사업 위탁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들을 지원하고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